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법률적 기초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분석 및 각국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연구원 이 철 남*

최근 각국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바탕이 되는 라이선스를 분석하고 각국 정부의 지원현황 및 법률적 근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I. 들어가며	3. BSD
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4. MPL
1.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	IV. 각국의 오픈소스 지원정책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1. 페 루
3. 구별개념	2. 유럽연합
I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	3. 미 국
1. GPL	4. 기 타
2. LGPL	

I. 들어가며

GNU/LINUX를 중심으로 한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진영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논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오고 있는, 어쩌면 조금은 진부하다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오래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각국 정부가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오픈소스 소프트웨

연락처: *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02) 570-4313, seabird33@kisdi.re.kr

어(Open Source Software)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가 지적재산권을 파괴하고 있다’,¹⁾ ‘리눅스는 암적인 존재이다’²⁾라는 등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서 오래된 논쟁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시애틀에서 있었던 정부 지도자 컨퍼런스(Government Leaders' Conference)에서 빌게이츠 회장은 자유 소프트웨어는 반자본주의(anti-capitalism)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맹 비난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접근 방식은 소프트웨어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정부의 투자와 개발은 그것이 상업화될 수 있다는 기초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국 정부가 자유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개발에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하지 못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세 수입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오픈소스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자본주의에 상반된다는 것이다.³⁾

하지만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의 정부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 및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에는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자유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라이선스의 차이 때문은 아닐까? 각국 정부의 오픈소스 지원정책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건 및 주요 라이선스를 분석하였으며, 페루 및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

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1. 자유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역사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개념은 1980년대 중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및 그가 세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과 함께 생겨났다. 여기

1) “Microsoft Executive Says Linux Threatens Innovation”, Bloomberg, at <http://news.cnet.com/investor/news/newsitem/0-9900-1028-4825719-RHAT.html?tag=ltnc>

2) “Microsoft CEO takes launch break with the Sun-Times”, at <http://www.suntimes.com/output/tech/cst-fin-micro01.html>

3) ZDNet News, “Stallman takes to task over GPL attacks”, 2002. 5. 1, at news.zdnet.co.uk/story/0,t269-s2109466,00html

에서의 “free”는 “무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이다. 이 개념은 여러 프로젝트들과 함께 계속해서 발전하였는데, FSF GNU 프로젝트와 Debian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비슷한 개념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는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났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운동이 “해커(Hackers)”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Sun, IBM 등 IT산업의 주요 멤버들을 참여시킴과 함께 “From licensing to service”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장하여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OSI는 현재 30개 이상의 라이선스들을 오픈소스의 정의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FSF보다 산업계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특징짓기 위하여 “카피레프트(Copyleft)”라는 용어를 곧잘 사용하곤 한다.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SF)의 정의에 의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copyleft” 한다는 것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특정한 배포 조건(distribution terms)을 추가하게 되는데, 그 배포조건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의 코드를 사용, 수정, 배포할 권리와, 원래의 조건과 동일한 배포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드와 자유(freedoms)는 법적으로 분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면 일단 특정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 되면 이후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copyleft 라이선스에 구속되는데, 이를 “바이러스 효과(viral effect)”라고 한다.⁵⁾

주의할 것은 OSS에 포함되는 모든 라이선스가 copyleft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BSD 라이선스나 Artistic 라이선스는 Non-Copyleft이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조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와 다른 소프트웨어의 차이는 “라이선스”의 차이에서 나온다. OSS가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조건(distribution terms)이 OSI에서 정한 다음의

- 4) “Copyleft”의 개념은 종종 Copyright의 반대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이는 “Copy-right”와 “Copy-left”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아가 정치적으로 우익과 좌익으로 확대하는 경향 때문이다. 하지만 “left”를 “leave”의 과거분사로 이해하면 “Copy-left”는 “복제할 수 있는”의 의미로 해석된다.
- 5) 사적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이러한 바이러스 효과를 과장하여 OSS 진영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들은 copyleft 코드를 한 줄이라도 이용하면 소프트웨어 전체가 감염되어 copyleft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표현만을 보호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copyleft 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로 표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9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⁶⁾

가. 재배포(redistribution)의 자유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수개의 다른 소스들로부터 만든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집합 소프트웨어 배포물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판매 혹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라이선스는 그와 같은 판매에 대하여 로열티 기타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나. 소스 코드

프로그램은 소스코드를 포함하여야 하며, 컴파일된 형태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의 형태로도 배포가 허락되어야 한다. 어떤 사정 때문에 소스코드가 제품과 함께 배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스코드 복제에 드는 정도의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것이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고의로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전처리기(pre-processor)나 번역기(translator)의 결과물과 같은 중간형식(intermediate forms)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 2차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의 변경과 2차적 소프트웨어를 허용하여야 하며, 원래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동일한 조건하에 재배포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소스코드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독립된 제3자가 소프트웨어를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실험할 수 있고, 수정된 것을 재배포할 수 있을 때 빠른 발전이 일어난다.

라. 저자의 소스코드의 완전성(Integrity)

프로그램을 만들 때 프로그램의 변경을 위해 소스코드와 함께 “패치파일(patch files)”의 배포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정된 소스코드의 배포를 제한할 수 있다. 라이선스는 수정된 소스코드로부터 만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허락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2차적 소프트웨어의 이름이나 버전 숫자(version number)를 원래의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초안은 Bruce Perens가 작성했으며, 원래의 이름은 “The Devian Free Software Guidelines”이다. <http://opensource.org/licenses/>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촉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사용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반대로 저자나 유지자(maintainers)들은 사용자가 무엇을 지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와 그들의 명성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소스코드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하지만, 기본 소스(pristine base sources)와 패치로 배포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공식적인(unofficial)”수정이 가능하지만 기본 소스와 구별될 수 있다.

마. 사람이나 그룹에 대한 차별금지

라이선스는 어떠한 사람이나 그룹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바. 이용하는 분야(fields of endeavor)에 대한 차별금지

라이선스는 어느 특정분야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거나, 유전자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사. 라이선스의 배포

프로그램에 부여된 권리는 프로그램이 재배포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얻지 않고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 특정제품에서만 유효한 라이선스의 금지

프로그램에 부여된 권리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일부분으로 배포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자.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라이선스의 금지

라이선스는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동일한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까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3. 구별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 “Freeware”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다.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Bundled Software도 이것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 ii) “Shareware”는 무료로 배포된다는 점에서 freeware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전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 혹은 제한된 기능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비슷한 개념으로 Demos/“Crippleware”, “Consortium-Ware”, “Non-

commercial use only” 등이 있다.

- iii) “Public domain software”는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따라서 누구든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스코드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 iv) “Proprietary software”는 Free software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를 가질 뿐이며, 일반적으로 코드에 접근할 수도 없다.
- v) “Shared Source Softwar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한된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생겨났다. 이용자는 소스코드에 접근하여 수정하거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 이를 재배포할 수는 없다.

II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종류

OSI가 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정의에 합치하는 라이선스는 지난 4월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가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현재 33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모두가 모두 개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명한 GPL, LGPL, BSD, MPL 4가지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1. GPL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OSS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선스로, GNU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GNU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⁷⁾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사적 제품(proprietary product)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항(이른바 copy-left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⁸⁾ 이것은 GPL이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GPL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목적코드(object code) 또는 실행 가능한 형태(executable form)로도 배포를 허락하지만, 이 경우 어떤 형태로든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⁹⁾ 둘째 2차적 저작물이 GPL에 의해 라이선스 된다는 조건

7) 리누스 토발즈가 처음 만들어 배포한 linux kernel이 대표적이다.

8) GNU General Public License, Article 4.

하에 코드의 변경 및 재배포를 무제한으로 허용한다.¹⁰⁾ 셋째,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완전한 통합 (complete integration)은 그 소프트웨어가 GPL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¹¹⁾

2. LGPL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¹²⁾은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사적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허용하기 위해 FSF에 의해 만들어졌다.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가 아닌 모듈과의 링크를 허용한다는 면에서 완전한 copyleft 라이선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LGPL은 보통 library를 라이선스 할 때 사용되는데, 특히 free library에 대응되는 상용 라이브러리가 존재할 때 사용된다.¹³⁾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비슷한 기능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할 때 제한이 별로 없는 상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유(free) 라이브러리는 점점 사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대응되는 상용 라이브러리가 없는 자유(free)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는 LGPL 대신 GPL을 사용하고 있다.

3. BSD

BSD 라이선스는 예컨대 Apache 웹서버¹⁴⁾ 등에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사용자들에게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¹⁵⁾ 심지어 copyleft 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적 소프트웨어 벤드들도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OSS 컴포넌트(components)를 그들의 제품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X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변경, 통합, 발행, 배포

9) GNU GPL, article 3.

10) GNU GPL, article 2.

11) GNU GPL, article 2.

12) LGPL은 원래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의 약자였다.

13) GNU C library가 대표적이다.

14) 아파치 웹서버는 현재 관련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있는 OSS 소프트웨어이다.

15) 비슷한 라이선스로는 the X-11 and other X-type license, the Apache software license, the Cryptix General License, the W3C Software Noctic and License, the Python Copyright License, the Zope Public License, the LDAP license, Phorum License 등이 있다(<http://www.opensource.org/licenses/>).

및 판매할 권리를 부여한다. 다만 때때로 저작권 표기를 요구하거나, 코드 변경의 날짜, 저자 및 변경목적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4. MPL

MPL(Mozilla Public License)도 이용자에게 이후의 라이선스 계약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즉 copyleft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GPL과 흡사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가 소스코드에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용자가 원래의 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했거나 추가시킨 경우에, 해당 소스 코드를 원래의 개발자나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표해야 하지만, 실행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는 사적 제품 라이선스를 포함한 어떠한 라이선스를 사용해서도 배포할 수 있다.

MPL은 OSS 그룹과 산업계와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FSF의 GPL과는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MPL 코드는 최초의 개발자의 결정 없이는 GPL이 될 수 없다.

이밖에 주요한 OSS 라이선스로 Artistic License, the Netscape Public License, the Apple Public Source License, Q Public License 등이 있다.

IV. 각국의 오픈소스 지원정책

최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옹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 및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 국방부 등 미국 내에서조차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비용이 저렴하고, 특정 벤더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져온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1. 페 루

페루는 현재 정부기관 등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¹⁶⁾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가. 입법이유

페루의 헌법은 “모든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16) Use of Free Software in Government agencies law

있으며,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혹은 법률에 의해 제외된 정보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¹⁷⁾ “개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⁸⁾ 이는 헌법이 한편으로는 시민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정보의 비공개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이러한 권리는 국가기관의 선의(good will)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technology)’에도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제안되는 법안은 공공정보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고, 공공 데이터의 항구성과 국가 및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코딩(coding)이 단일의 벤더에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표준 및 공개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이를 보장할 수 있으며, 양립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정보의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유지가 벤더의 선의에 의존해서도 안되며, 독점적 상태에 의존해서도 안된다. 오로지 소스코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보장된다.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 원격 조정(remote control)이나 원치 않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접근 가능하고 국가, 시민, 전문가들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스코드의 분석을 통해 스파이웨어(spyware)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높은 안전을 보장하게 된다. 개인이나 가족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나. 자유 소프트웨어 도입의 효과

자유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프트웨어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국가 및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에 있다.

1) 국가의 안전(National Security)

국가는 필연적으로 시민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때 국가는 데이터의

17) Peruvian Constitution, section 5 of article 2DEG

18) Peruvian Constitution, section 6 of article 2DEG

정합성(integrity), 시민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정보노출의 위험, 접근의 제한 및 데이터의 조작 등과 관련한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들은 소스코드를 공개함으로써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2) 기술적 독립성

사적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확장이나 수정에 있어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기술적 종속성을 강요하며, 제공자가 가격 및 기간 등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명령한다. 반면 자유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 수정할 자유를 준다.

3) 지역발전

사적 소프트웨어는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자유는 주지만 프로그램의 내부를 조사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배제되기까지 한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역 전문가들(local professionals)로 하여금 기술적 한계를 가지게 한다. 하지만 자유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의 공개를 통하여 지역적 차별이 없으며, 전세계 어디에서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의 비용

자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상용 소프트웨어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5) 기 타

자유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 법률의 주요내용

1) 목 적

국가 전체의 시스템 및 컴퓨팅 장비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채용함에 있다.¹⁹⁾

2) 적용범위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각 기관들 및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시스템 및 컴퓨팅 장비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²⁰⁾

3) 자유소프트웨어의 정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용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19) Use of Free Software in Government agencies law, Article 1.

20) 같은 법안 제2조

보장하는 라이선스를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다.²¹⁾

- i)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프로그램의 무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 ii) 각각의 소스 코드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 iii) 프로그램의 동작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검사가 가능할 것
- iv)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내부 메커니즘이나 적절한 부분의 이용이 가능할 것
- v)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가 자유로울 것
- vi)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자유로우며,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원래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자유롭게 배포가 가능할 것

4) 기 타

일정한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²²⁾

2. 유럽연합

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동이용(Pooling Open Source Software)

최근 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자료는 유럽 각국의 행정기관들이 전자정부를 구축하는데 있어 오픈소스 라이선싱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경제성, 품질(Quality), 철학(philosophy)의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²³⁾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처음 구입비용 뿐만 아니라 유지비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각국에서 거의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 보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유하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각국의 소프트웨어 개발팀간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품질도 높일 수 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부분을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새로운 응용제품을 만드는데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보다 높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동 이용하는 것은 유럽 국가들간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21) 같은 법안 제4조

22) 같은 법안 제5조

23) Patrice-Emmanuel SCHMITZ · Sebastien CASTIAUX, Polling Open Source Software, An IDA Feasibility Stud,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 June 2002.

나. 회원국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

회원국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유럽 각국의 OSS 지원정책

국 가	지 원 내 용
벨기에	OSS를 채택할 것을 제안
덴마크	의회가 OSS를 지원할 것을 선언
핀란드	의회가 OSS를 지원할 것을 선언
프랑스	학교와 정부기관에서 OSS 채택 OSS를 강제 사용할 것을 제안
독 일	OSS를 선호, 150 리눅스 서버
이탈리아	OSS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네덜란드	보안을 위하여 OSS에 대한 조사

자료: NERA Economic Consulting²⁴⁾

3. 미 국

2002년 5월 10일 미 국방부는 오픈 소스가 보다 안전하고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자유 소프트웨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자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Agency)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²⁵⁾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로비로 미국 정부 내에서 오픈 소스를 옹호하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²⁶⁾

4. 기 타

유럽 및 미국을 제외한 기타의 국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4) Dr. Albert L. Nichols, Government Policy Toward Open Source Software,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2. 7. 10.

25) "Open-Source Fight Flares At Pentagon", Washington Post 2002. 5. 23., at <http://www.washingtonpost.com/ac2/wp-dyn/A60050-2002May22?language=printer>

26) Tim O'Reilly, "The Strange Case of the Disappearing Open Source Vendors", at <http://www.oreillynet.com/lpt/a//network/2002/06/28/vendor.html>

〈표 2〉 비유럽 국가의 OSS 지원정책

국 가	지 원 내 용
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법안 상정 브라질의 몇몇 자자체에서 OSS 사용요구
중 국	OSS의 인정 Red Flag Linux
인 도	리눅스 추천
필리핀	정부에서 사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
싱가폴	OSS를 지원하고 개선하기로 제안
대 만	OSS 지원을 계획
태 국	태국어 OSS를 지원

자료: NERA Economic Consulting

V. 맺음말

스톡만은 영국 ZDNET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 소프트가 GPL을 공격하는 것은 GPL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유화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GPL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상업화(commercialize)가 아니라 사유화(privatize)이다.²⁷⁾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독점적인(proprietary) 버전을 만들기를 원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hared source” 프로그램은 결코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다른 이름의 비공개협정(non-disclosure agreement)일 뿐이다.²⁸⁾

각국 정부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이미 예정되고 있었던 수순이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원의 이유가 주로 경제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은 사적 소프트웨어의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균형점에서 타협을 이루어 공공영역에 사적 소프트웨어의 공급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7) GPL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들도 이미 상업화되고 있다. IBM, Apple, HP 등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유소프트웨어를 상업화해 왔다. 단지 라이선스보다는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28) 스톡만은 비슷한 예로 1990년 경 AT&T Unix 소스코드를 공부했던 학생들을 들고 있다. AT&T NDA에 사인했었던 학생들은 AT&T로부터 Unix와 관련된 NDA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받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취업의 문이 좁았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오픈소스의 투명성에 의한 시민사회의 프라이버시를 담보해 내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되며, 또한 국가의 자의에 맡겨서도 안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특히 GPL에 기반을 둔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은 최근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듯 하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from license to service”는 창작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비단 소유권 유사의 저작권제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기술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1999
- [2] Patrice-Emmanuel SCHMITZ · Sebastien CASTIAUX, Polling Open Source Software, An IDA Feasibility Stud,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 June 2002.
- [3] Eric S. Raymond, “The Cathedral & Bazaar”, O’Reilly 2001, at <http://www.oreilly.com/catalog/cathbazpaper/chapter/ch05.html>
- [4] Tim O’Reilly, “The Strange Case of the Disappearing Open Source Vendors”, at <http://www.oreillynet.com/lpt/a//network/2002/06/28/vendor.html>
- [5] Mathias Strasser, “A New Paradigm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Case Against Open Sources”, 2001 Stanford Technology Law Review 4, at http://stlr.stanford.edu/STLR/Article/01_STLR_4
- [6]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최근 동향”,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세미나 자료집, 2002. 7.
- [7] Mozilla Public License 1.1
- [8] Apache Software License
- [9]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1991. 6.
- [10] GNU Lesser Public License
- [11] IBM Public License Version 1.0
- [12] The Artistic License